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18. 10. 1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용 범 위 원 장

*의결 제243호~제247호, 제252호~제257호

조 성 욱 위 원

이 상 복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14시00분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18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2018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 2018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4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자료의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운영’에 보면 “매년 초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공표”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할 예정인지?

- (보고자) 이것은 규정에 상세히 정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미리 알려주는,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회사에게 연말에 알려주는 것도 아님.

○ (위원) 기존 감사의 경우는 자율수임체제였고 배정이나 지정 방식은 보조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paradigm)이 자율수임보다는 지정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는 것임. 그러면 결국 회계법인들이 제도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결국 경력이 많은 회계사를 확보하는 것이 회계사 운영에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될 테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point)가 됨. 그래서 과연 우리 회계산업에 그 요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음. 일단, 주기적 지정제 초기이니까 회계법인 품질관리라든가, 체제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만한 근거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축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감사인, 회계사 수와 더불어 축적되는 자료를 활용해서 향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함. 단순한 예로써 품질관리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면 회계법인의 시스템이라든가, 전체 수익금액에서 투자규모라든가, 교육에 투입되는 규모라든가, 품질관리담당자 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요소들이 많이 있음. 그런 것을 잘 축적하셔서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감사품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개혁법에서는 상장사 감사인등록제도도 마련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여부를 점검하면서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업무경험이 누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그런 것들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앞으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험이 더 쌓일 수 있고, 또 그러한 결과들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품질평가결과를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44호 『삼일니트(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5호 『태령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6호 『부산주공(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7호 『(주)골드퍼시픽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14시35분 정회)

▷ 위원장 퇴장함(증선위 비상임위원이 회의주재)

(14시55분 속개)

□ 의결안건 제248호 『(주)바른테크놀로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14년 감사인 OO회계법인의 주 책임자인 공인회계사

000이 최근 2년 내 외감법 위반으로 받은 조치(주의)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가중 조치를 제외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 책임자인 공인회계사 000가 전에 어떤 사유로 '주의'를 받았는지?

- (보고자) 최근 2년 이내에 위반하여 조치받았을 경우 가중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과거 증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던 기억이 있음. 조치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결론적으로 감리위원회 심의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함.

○ (위원) 00회계법인 주 책임자 공인회계사의 경우 최근 2년 내 위법행위로 1단계 가중조치가 되었는데, 경미한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1단계 가중조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함.

○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49호 『(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으로 영업권 관련해서 지

적한 금액이 XX억원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000이 관계기업에 XX억원을 투자하고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XX억원이 000000000로 가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000000000가 그 XX억원 중에서 XX억원이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주)0000000이 000000000에 대해서 영업권 XX억원을 계상하였음. 이것을 지분법으로 지분을 끌고 오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XX억원이 되는 부분임.

- (보고자) (주)0000000 장부가액은 XX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회사는 그것을 지분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XX억원은 (주)0000000 입장에서는 영업권이 전액손상되고 그것을 관계기업으로 가져오면 XX억원의 XX%를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지분법 손실로 XX억원을 가져오게 됨.

○ (위원) 회사는 원래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 (보고자) 원래는 최초에 투자했을 때 (주)0000000의 당기순이익이 당시에 XX억원 정도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XX%를 지분법 이익으로 계상을 했는데 XX억원의 손실을 반영

하게 되면 지분법 손실 XX억원만큼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임.

- (위원) 그런데 실제 이 회사가 메르스 때문에 타격을 받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일어나지는 못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보고자) 그 다음에 사드도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OOOOOOOOOO는 2017년 7월에 폐업하고 (주)OOOOOOOO 자체는 지금 현재 영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그런데 두 번째는 투자주식 계정 분류 오류임. 이게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갈 것이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갈 것이냐, 이게 계정분류사항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0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지분법을 조기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례가 많지 않아 동 기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고, 회사가 적용한 회계처리가 별도재무제표의 순이익과 연결재무제표 지배지분 순이익이 일치되도록 한 이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처리이며’라고 되어 있음. 또한, ‘자기자본이 과소계상되어 재무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감리위원회 소수의견과 같이 1단계 추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회사 지적사항 중 ‘지분법적용 오류’의 경우 기준서 해석에 논쟁이 있는 부분을 재검토 후 자진정정한 점 및 재무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회사 및 감사인 모두 1단계 추가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함.

○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1호 『(주)이지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 (진술인) 저희 회사는 제가 92년도에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함께 창업을 했음. 2018년 현재로 보면 반기에 실적은 조금 나뻐지만 자산규모가 85억원에 매출액 49억원, 인원이 한 37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임. 등록법인이 된 이유가 99년 창업하고 나서 이때부터 벤처투자사에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때 당시 50명이 넘었음. 그때 직원들한테 주식을 적당량 배분하는 과정에서 25명이 넘으면 등록법인이 된다는 사실도 몰랐음.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작은 회사한테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함. R&D 투자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참작 같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기술기반의 강소기업으로 저희 기술을 수출해서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 놓겠음. 지금 감사인들이 지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지금은 돈이 집행되면 제 스마트폰에도 뜨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통장하고 자금을 맞추어 보는 시스템도 도입하였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임.
- (위원) ‘사건개요 및 감리 결과 조치’에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자금 및 회계 담당부장의 횡령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6~7년 된 것 아닌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된 측면이 있음.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000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언제 입사했는지?

▶ (진술인) 제 기억에 97년, 98년경으로 기억하고 있음.

○ (위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면 증권발행제한으로 해 달라는 취지인 것인지?

▶ (진술인) 그게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음. 가능한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분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것임.

○ (위원) 2016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분기재무제표는 왜 수정을 안 했는지?

▶ (진술인) 그것은 전혀 몰랐음.

○ (위원) 2017년 3월에서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정공시를 하였는지?

▶ (진술인) 000가 3월22일에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협조적이었음. 그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희 회사가 기말 수정보고도 제대로 못했을 것임.

○ (위원) OO회계법인과 하면서 그 당시에 분기 재무제표 수정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그때는 인지를 못했음.

○ (위원) OOO사장님의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 (진술인) 대표이사는 연구개발 쪽을 했음. 저는 영업이 가장 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운영을 도맡아서 했음. 그다음에 사건을 일으킨 OOO 부장이 회계 쪽에 대해서는 전부 담당하였음.

○ (위원) 그 OOO부장님은 OOO사장님의 부하직원으로서 관리 책임은 OOO사장님이 지고 계시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회사 내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음. 그것에 대해서 약간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회사 등기임원으로써 OOO사장님께서 그 책임을 맡고 계시는 것임. 그것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고 보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OOO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형편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기에는 회사에 끼친 손해가 굉장히 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술인)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관리가 됐던 부분임. 책

임은 통감함.

- (위원) 000사장님은 000부장의 자금과 관련된 결재를 하셨는지? 회사 관리시스템상 결재는 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회사는 자금 및 회계담당직원이 횡령 사실을 자백하자마자’ 어쨌든 인지하게 되셨고 추궁을 했을 것이고 000 부장이 순순히 횡령사실을 자백했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순순히 자백했다는 것이 의외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임.

▶ (진술인) 3월22일에 그렇게 자백을 했지만 그 이전에 회계법인이나 저나 이상한 게 좀 있다고 해서 계속 파헤쳐가는 중이었음.

▶ (진술인) 일단, 저의 책임을 통감함. 위원님들께 호소드림.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람. 한 직원도 나가지 않고 단결해서 2017년 성과를 굉장히 좋게 냈음. 그 사건 사고 이후에도, 그리고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어렵게 지냈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많이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의 진술을 듣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진술인들의 진술을 감안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빼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입장임.

- (위원) 실제로 재무제표 수정공시하면 우리가 감경을 함. 2016년 1분기에서 3분기 공시를 하지 않아서 감경을 못 받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논리 같음.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3월22일에 이 사건을 인지했고 2016년말 재무제표가 바로 공시되니까 실은 이해관계자 보호 측면이나 우리 양정 기준이나 재무제표 개정안에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관계자한테는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여짐.

- (위원) 비상장법인으로 이해관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분·반기 재무제표의 동기를 원래 온기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음.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1단계 경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 (위원) 저는 여기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영향이 안 갔다는 의견에는 찬동하지 않음. 횡령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재무제표 수정한 것은 맞지만 재무상황을 보면 부채가 굉장히 많음. 이 얘기는 이 회사의 채권자의 형태로써 자금을 조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금조달을 해

주신 분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투자한 자금이 제대로 회사의 운영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임. 횡령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이해관계자한테 영향을 줬겠지만, 그게 미미하다는 것임.
- (위원)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말씀드린 요지는 회사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노력한 것임. 그리고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해관계자는 제한적임. 회사가 이미 관리부실에 대해서 큰 데미지(damage)를 입은 상태이고, 거의 자본잠식 단계에 이르는 단계에서 우리가 ‘000 000’ 조치를 해도 제재의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저는 보여짐.
- (위원) 이 안건은 비상장기업에서 임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직원의 횡령이 발생해서 사업보고서와 감리보고서에 대해서 감리가 들어간 것임. 이 사건에 대해서 피상적인 결과. 즉, 횡령이 발생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인 경우에는 임원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잘못된 프레임 안에서 보는 것은 막아야 되고, 이것을 선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위원) 맥락과 사정이 다 다른데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록 해 주시기 바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므로 분·반기 재무제표의 효용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반기는 기말에 비해 결산과정이 간소하여 분·반기 위반동기를 기말 위반동기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2016년 분·반기 보고서 위반동기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함. 또한, 회사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자진수정한 점,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회사에 대하여 1단계 추가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함.

○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16시50분 정회)

▷ 위원장 입장함(위원장이 회의주재)

(17시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252호 『OOOOOOOOOO(주) 등 96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고자)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산출 근거에

의하면 위반건수는 XXX건으로서 거래종목, 주문건수 등을 고려해서 건수를 계산하였음. 기준금액은 법인 건별 6,000만원, 부과비율은 그 위반동기가 ‘중’에 해당되고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되어 80%를 적용하였음.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본 이유는 담당자의 대차잔고 입력 오류를 적시에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라고 판단했음.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한 것은 위반사실이 다수 언론에 공표되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임. 그 결과 예정금액이 XX억 X,XXX만원이 나왔는데, 법률상 최고한도(1억원)의 10배를 부과한도로 하기 때문에 10억원을 최종부과금액으로 산정하였음. 부과한도(10억원) 적용 사유는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취지와 기초치 사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부과했음. 당시 규정개정 취지는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을 도입(‘13.6.17.)하면서 과태료 부과금액 총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상 최고한도액 10배 초과부분의 감경근거를 ‘13.12.20.에 마련하였고, 부과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한 전액 감경 근거를 ‘17.10.19. 명시를 하였음. 기초치 사례를 첨부했는데 관련 조문에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간 자본시장법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재량의 여지없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부과한도로 적용해 왔음.

○ (위원) 부과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 (보고자) 예정금액은 초과할 수 있음.

○ (위원) XX억원과 1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XX억 원이 나오더라도 10억원을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음. 원래 과태료 부과 건별 원칙이 2013년도에 도입되면서 건별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그 위반행위가 무한대로 늘어나서 과태료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음. 그러면 너무 과중하게 부과되는 것을 일부 방지하기 위해서 ‘건별 부과원칙 도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융위 재량으로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한다’고 해서 ‘제재의 실효성 또는 수용성 재고를 위해 다른 부처 및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추가한다’고 해 놓고 그 두 번째가 ‘부과예정금액이 법률상 최고 한도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즉,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를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2013년도에 도입했음.

○ (위원) 이번에는 XX억원인데 예를 들어 이게 500건이라 그게 한 500억원이 나왔다면 그래도 10억원이 한도가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결론적으로는 10억원이 한도가 됨.

- (보고자) 2013년 6월16일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음. 그래서 그 보도자료와 일관성 있게 2013년에 12월에 규정개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 총액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아까 보신 과태료 10

배 초과를 전액 감경할 수 있는 규정 근거가 들어왔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적용함.

- (위원) 그게 감경이지, 어떻게 실링(ceiling)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과태료는 건별 부과원칙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닌지?

- (보고자) 그러함.

- (보고자) 자조심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음. 자료의 조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가감을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규정에 들어갔음.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음.

- (위원) 이것은 재량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그것은 조문상 재량이라고 판단된다고 자조심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금감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조문은 재량이지만 사실상 이것을 캡(cap)으로 해서 10배 넘은 것은 선례로 감경해 왔다는 이슈(issue)였고, 그래서 다른 사건도 아니고 공매도 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례를 바인딩(binding)해야 되겠느냐 하는 논의가 자조심에서 있었고 증선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

겠느냐 했음.

- (위원) XX억 X,XXX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감경할 수 있음. ‘감경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법률가의 해석임. 맞는지?

- (보고자) 구문상으로는 그렇게 됨.

- (위원) 이 해석이 맞음.

- (위원) 위반규모를 보게 되면 공매도 사건 선례와 비교해 볼 때 이런 선례가 없는지? 그다음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 무위반’ 관련 ‘●●●●●●는 20XX.XX.XX.~20XX.XX.XX. 기간’ 거의 2년임.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위반사실이 있었고, 자료에 보면 ‘자조심 주요논의사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공매도 제한 위반의 과태료 산정시 법률상 한도액의 10배(10억원)를 한도로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되었음’ 이것은 필요적 감경. 즉, ‘감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증선위의 재량이라고 해석하겠음. 그다음 그 아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한 근거에 대해 논의되었음’ 이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저는 자조심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년임. 이것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음.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태료 산출내역’ 보면 위반건수 XXX건, 법인 건별 6,000만원 이럴 수 있음. 그런데 부과비율 80%는 위반동기를 ‘중’ 그리고 위반결과를 ‘중

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10억원이라는 숫자의 제한을 받게 되면 위반동기를 '상'으로 보더라도 10억원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관행상 한 것임. 하지만 규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청의 재량으로 되어 있음. 자료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1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위반행위의 동일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부과비율 위반동기 '중' 이 부분도 과연 이게 위반동기가 '중'이고 위반결과가 '경미'냐 하는 것도 견해를 조금 달리함.

- (위원)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장소적 근접성은 그럴 수 있지만 2년 동안 위반행위를 한 것이 시간적으로 근접했다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포괄적 일죄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묶어서 적용한 판례는 없음. 그리고 '행위의사의 단일성' 이 부분도 행위의사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일죄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 한 사람을 놓고 보는 것임. 그런데 2년 동안 과연 행위자가 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 행위의사가 단일했는지, 아니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였는지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임. 그러니까 2년 동안 구체적인 내역을 봐야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임.

- (위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누락한 발생 경위를 보면 T-1일 종가를 적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음. 이 T-1일 종가 적용으로 인해서 보고 누락 건수가 XXX회에 XXX일.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 누락이 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거꾸로 T-1일로 인해서 보고가 된 경우는 없었는지?

- (보고자) 그것도 있음.

- (위원) 그러면 잘못 보고된 것도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코딩(coding)을 처음에 잘못해서, 처음에 공매도 보유잔고 보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시스템을 설계했음. 그때 설계자가 착오를 해서 T-1로 코딩(coding)을 한 것임.

- (보고자) 논의하는 것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잔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것이 보고기준이 위반주식총수의 0.01%인데, 지금 1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0.01%가 지나치게 과소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담 경감 차원에서 1억원 미만이 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위반 건임.

- (위원) 이렇게 10억원 이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문제는 10억원 이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한다면, 예정금액이 XX억원인데, XX억원과 10억원 사이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과거 관행과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는지, 과거 관행과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임. 결제불이행의 규모나 이런 것도 그러함.
- (위원) 좋은 지적임. 위반결과를 할 때 ‘언론에 공표되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결제불이행이라는 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됨. 결국 결제불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결제불이행 사태가 chain reaction을 불러 오는 것임. 하나가 결제불이행이 되면 다음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결제불이행사태가 일어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언론 공표되는 것은 나중에 나온 결과인 것임. 결제불이행이 났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님. 제가 볼 때 규정도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의 결제안정성, 투자자 신뢰 그런 쪽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음.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표현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그리고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공

때도하고 이 ○●○○○○의 공매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감독당국이 관용을 베풀거나 아니면 재량권으로 경감을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결제 불이행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나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질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양태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판단해서 중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음.

○ (위원) 만약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을 단일사건으로 안 보면 대략 몇 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위반은 XXX건임. 위반횟수임.

○ (위원) 위반건수를 1건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은 형사법 관련 판례들이 있을 것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보고자) 이것은 사실 위반시스템을 만들려고 전산 코딩(coding)을 하면서 날짜 계산을 딱 하나 잘못된 것임.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의 근접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한 것이고 그리고 행위의사는 그거 하나

임. 그래서 1건으로 본 것임.

○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오류라고 보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보고자) 공매도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건별 부과를 하겠다고 명시된 기준이 있음. 일자 별로 종목 별로 산정하도록 규정에 있음. 그런데 지금 이 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XXX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중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음. 이런 경우는 1건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임.

- (참여자) 보고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매일 카운트(count)가 되고 그것이 전산적으로 자동보고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임. 그래서 그 보고 자체가 사람의 개입이 아닌 컴퓨터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보고누락 발생일이 XXX일이고 일별·종목별 발생 건수가 XXX회 되는데 또 반대로 불필요한 보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거의 매일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1건의 행위로 본 부분이 합리성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자조심에서 그렇게 논의된 바 있음.

○ (위원) 그러면 ●●●●●은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금감원에

서 조사 나오면 이것은 적발이 될 것이라고 해서 자진신고를 한 것인지?

- (보고자) 시스템 개선 작업을 했었음.

○ (위원)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다가 이게 나온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해외에 있는 지점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다가 코딩(coding)이 규정과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임.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진신고를 함.

○ (위원) 위반동기도 그렇고 이것을 단일건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오늘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위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재량임. 그래도 10억원을 한도로 할 수는 없음.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으로 부과한도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음. 그러면 얼마나 이것은 논의를 또 해 봐야 됨. 그리고 XX억원도 위반동기가 ‘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달라지는 것이 되니까 지금 제시된 안과 차이가 또 있고, 그리고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자진신고한 것을 1건으로 보느냐 여러 건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논점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서 단일건으로 보는 안도 있고 여러 건으로 봐야 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음. 그래서 그런 것을 열어 놓고 검토하셔서 새로 안건을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결과가 초안과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의결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음. 공매도제한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결제불이행 발생에 따른 자본시장질서가 교란되고 투자자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기존의 법규 해석과 적용관행에 얽매이기 보다는 관련조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10억원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있을 것임. 제252호 안건은 보류할 것을 제안함. 따라서 본 건 관련 적절한 과태료 조치 수준을 추가검토하여 증선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에 대해서도 오늘 증선위에서 논의된 쟁점을 추가 검토하여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치를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워낙 이 사유가 중대하고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해 미치는 과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셔서 충실하게 조치안을 다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53호 『OOOOO(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이번 금감원 조사를 받을 때와 받고 나서도 고발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큼. 저는 과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음. 그래서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 이번 금감원 조사 당시 C가 평소 저에게 돈을 빌려가고는 했었고 또 다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 그 과정에서 C의 지인이 ◇◇◇◇◇(주) M&A와 관련해서 돈을 구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제 스스로 금감원 조사 때 진술하였음.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떳떳이 밝혔던 것임. 만일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면 금감원에 과거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M&A 소문을 들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지 못했을 것임. 또 C는 ◇◇◇◇◇(주) M&A와 관련된 사람도 아니었고 M&A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음. C나 저는 그저 M&A가 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였음. 제가 ◇◇◇◇◇(주) 주식을 샀던 이유는 어찌되었든 간에 M&A 소문이라도 있었고 회사 내용을 살펴보니 적어도 현 시점에서 사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저는 단지 M&A 소문을 들었다고 제 스스로 밝혔고 회사 상태를 종합 분석해서 이 주식을 산 것이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음. 부디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이 사건에서 진술인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진술인이 단지 소문 정도의 정보를 들었을 뿐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술인이 X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적어도 X차 이상의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진술인은 단순히 소문정도만을 들었을 뿐이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음. 진술인은 지인인 C로부터 X억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알아보는 것 같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음. 따라서 대량 취득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누가,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 나아가 C가 내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풍문 내지 소문 정도만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들었다고 볼 수가 없음. 따라서 단순히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한 바 없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위원)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하게 된 특별한 동기, 이유가 있는지?

▶ (진술인) 종목 자체는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못했고, 지인이 ◇◇◇◇◇(주)라는 종목을 얘기해서 그 종목을 알게 되었음.

○ (위원) C로부터 이 회사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정보를 받고 주식을 거래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이 회사 정보 공개 전일에 대량으로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있는지? 이 회사 정보공개 전날에 대량으로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왜 갑자기 매수하셨는지?

▶ (진술인) M&A 소문도 있었고 제가 그 회사 종목을 검색해 보니까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 당시 CCTV가 중동 진출한다는 좋은 기사가 나와 있었음. M&A 소문도 들었고 최소한 지금 사면 손해는 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샀던 것임.

○ (위원) 본인 자금 이외에도 신용 용자를 이용해서 매수 규모를 늘려 가는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그러함. 그것은 제가 이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항상 신용을 사용해 왔었고, 제가 주식을 한 20년 이상했는데 제 주식투자 성향이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이용을 하고 있음. 이 종목에 특정해서 신용으로 산 것은 아님.

○ (위원) 자료에 보면 ‘A는 C로부터 본 건 양·수도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이라고 나오는데, ‘막연한 가능성’이란 어떤 의

미인지?

▶ (진술인) C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도 대량취득에 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따라서 당시 들었던 것은 정말 대량취득 사실이 일어날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C가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도라면 단순한 소문 내지 풍문에 불과하다는 의견임.

○ (위원) 실제 투자하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지?

▶ (진술인) 그러함. 좀 있었음.

○ (위원) 여기 투자 규모가 한 XX억원 정도 되는지?

▶ (진술인) 실제 제 자금은 한 X억원 정로 기억하고 있음.

○ (위원) 나머지는 신용이고, 다른 종목도 다 이 정도의 규모로 하시는지?

▶ (진술인) 제가 종목을 선택하면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 하고 있음.

○ (위원) 이 종목 투자하셔서 언제 매도하셨는지?

▶ (진술인) X~X개월 정도 된 것 같았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실제로 B는 자금을 물색하기 위한 사람이고, 준내부자가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사실 인수자측에 똑같은 FI로 가입하려고 실질 인수자하고 교섭하였던 자임.

- (위원) 내부자라고 얘기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C를 준내부자의 지위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보고자) C는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데, B는 말 그대로 내부자와 교섭을 한 준내부자이고, C는 B를 보조한 사용인 또는 보조인으로서의 준내부자임. 자본시장법 제174조제5호에 근거함.

- (위원) 평소 어떤 비즈니스관계가 없어도 지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주식회사 ⅢⅢⅢ 사례에서도 그런 지인관계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였음.

- (위원)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참여자) 금감원에서 의올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B가 교섭하는 준내부자에 해당되고 C는 B로부터 요청받은 보조자 내지 사용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임. C는 B와 사실상 하나의 준내부자 그룹(group)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C로부터 정보를 받은 A는 1차 정보수령자가 된다는 구성임. 지금 사용인 내지 보조자에 대해 법원에서는 반드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있는 보조자로 인정해 주고 있음.

○ (위원) 우리가 검찰고발 할 때 인용조문을 적시해서 하는 것 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의결안건 제254호 『OOO(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 위반 조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의 보유주식 허위 기재 및 주주청약시 100% 청약할 것이라고 허위기재한 혐의 관련임. 저는 회사의 공시담당자이지, □□□□□□□□의 공시담당자는 아님. 저는 당시 A대표를 통해 받은 조합원 명부와 지분공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음. 또한, 100% 청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합의 최대주주인 A 대표를 통하여 이를 분명히 확인한 바 있음. 둘째, ◆◆◆◆◆◆에 대한 출자금을 전부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자금 XX억원을 전부 회수하였다고 허위기재한 혐의 관련임. 저는 출자금 회수부분에 대하여 회계처리 및 증빙을 참고하여 기재하였음. 저는 해당자금 및 회계자료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림. 셋째, 유상증자 자금을 전액 금융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 없음에도 자금사용 목적을 전액 금융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허위기재한 혐의 관련임. 자금의 사용목적은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자들의 내심에 대한 것으로써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저는 자금사용용도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집행의 업무상 권한도 없고 거기에 관여한 바도 없음. 스스로 부정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거래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음. 또한, 저는 2017년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고 이후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 이런 제반사

정을 살피셔서 부디 선처해 주시기를 바람.

○ (위원)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인지?

▶ (진술인) 소속은 경영지원실 소속으로 있었는데 저는 공시 업무만 전담하는 역할을 했음.

○ (위원) 공시업무를 전담하셨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그리고 재무나 회계는 다른 쪽에서 했음.

○ (위원) 공시담당 상무로써 한 일이 무엇인지?

▶ (진술인)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유상증자 진행 업무를 맡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업무에 할애했음.

○ (위원) 유상증자 업무를 직접 담당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증권신고서에 서명 날인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 등과 관련된 업무, 자료 관리는 본인이 하신 것인지?

- ▶ (진술인) 자료관리는 제가 하지 않음.
- (위원) 공시 담당 상무가 안 하면 그것은 누가 하는지?
 - ▶ (진술인) 일단, 그것은 회계팀,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류관리나 그런 것은 그 쪽에서 다 관리를 했음.
- (위원) 공시담당 상무를 하셨으니 증권신고서 작성에는 관여를 하셨는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B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는지?
 - ▶ (진술인) 2006년~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음.
- (위원) B가 ●●●●●를 인수한 2006년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지?
 - ▶ (진술인) B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 (위원) B라는 사람을 언제 알았는지?
 - ▶ (진술인) 존재 여부는 그 당시 알았음. 저는 대부분의 일을 C하고 일을 했었던 것이고, 제가 B와 직접 일을 처리한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음.

○ (위원) 일을 같이 한 적 없다는 것인지?

▶ (진술인) 일단, 회사에 출근하거나 회사 직제상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음.

○ (위원) 2009년 ○○○○○○ 근무 당시 B를 알게 되어, 알고 있었는지?

▶ (진술인) 그러함. 알고 있었음.

○ (위원) ■■■(주) 관련된 일을 할 때도 같이 근무하셨는지?

▶ (진술인) 근무를 같이 하지는 않았음. ■■■(주)는 안성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안성 사무실에만 계속 있었음.

○ (위원) ■■■(주)에서 몇 년 근무하셨는지?

▶ (진술인) 한 10개월 정도 될 것 같음.

○ (위원) 그다음에 ●●●●●●으로 가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B가 인수한 회사로 진술인도 같이 움직이셨는지?

▶ (진술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음.

- (위원) B가 ●●●●●●을 인수한 2017년경에는 진술인은 관리총괄 전무로 일하셨는지?
 - ▶ (진술인) 제가 했던 부분은 역시 공시담당 쪽하고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회사 구조조정 업무를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일을 보고 있음.

- (위원) □□□□□□□□의 前운영자인 D가 조합업무를 진술인한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인수인계한 것이 맞는지?
 - ▶ (진술인) 인수인계한 것은 D씨가 운영하던 □□□□□□□□을 ■■■(주) 인수하기 전에 기존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새로운 조합원을 받을 때, 제가 그때 실무 일을 한 것 외에는 □□□□□□□□ 업무를 본 적은 없음. 그때는 제가 실무 일을 봤었음.

- (위원) E의 진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 기재와 관련해서 진술인의 지시를 받았고, 또 □□□□□□□□ 지분 관련해서도 진술인이 직접 주관사에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 ▶ (진술인) 저는 최초 □□□□□□□□의 실무적인 업무 외, 그 뒤로는 제가 실무 업무를 본 적은 없음. 그래서 조합원이 누구인지, 조합원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A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음.

○ (위원) 일방적으로 A가 전해주는 자료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인지?

▶ (진술인) 왜냐하면 저희가 입수했던 자료가 □□□□□□□□□□의 조합원 명부임. 조합원 명부하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있으니까 조합원 명부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전체 주식이 일치하면, 그리고 공시상 지분공시와도 일치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입수한 것은 □□□□□□□□□□의 조합원 명부 그리고 회사의 주주명부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자료에 보면 ‘위반자 인적사항’ ‘B [■ ■ ■(주) 실질 사주(‘16.6.1~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질 사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 (보고자)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 주식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소위 실질 사주라고 부르고 있음.

○ (위원) 그러면 A는 바지 사장인지?

- (보고자) 바지 사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서 행위를 하는 자로 보임.

○ (위원) 방금 전에 진술했던 진술인이나 F는 근무기간이 짧음. 그러면 진술인은 B를 따라서 움직인 것 같은데 F도 같이 움직였는지?

- (보고자) F 같은 경우에는 인수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끌어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 남아서 주가 관리를 위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에 관여를 한 것임.

○ (위원) G는 증선위에 몇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분 회계사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도 H라는 사람도 기억이 남.

- (보고자) 같이 올라왔음.

○ (위원) 이 두 분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같음. G, H 이런 사람들은 자조심에 출석 안 했는지?

- (보고자) 한 번도 안 왔음.

○ (위원) 조사에는 다 응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자조심에서 공동정범과 그것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음. ‘주범과 조력자에 대해 다른 조치 양정’ 부당이득금액이 다 XXX억원임. B나 진술인 이 사람도 동일한 XXX억원, 그것에 대해서 자조심에서 언급이 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혹시라도 진술대로 연루가 안 되었을 그런 개연성은 없는지?

- (보고자)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음. B를 보면 과거부터 측근과 지인 그룹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범죄에 활용하기 때문에 측근과 지인 그룹들은 진술인뿐만 아니라 C, D 등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술인이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위원) XXX억원 이런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보고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술할 때 부당이득금액만 기술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XXX억원이 유상증자발행 대금이다 보니 이것을 현실적으로 분리하기가 힘들어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검찰도 충분히 세부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조력 여부나 그런 것을, XXX억원에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5호 『(주)000000000000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류하고 다음 회의시 상정할 것을 제안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미상정)*함

* 만장일치로 보류(미상정)를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56호 『(주)00·(주)000000 주식의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류하고 다음 회의시 상정할 것을 제안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미상정)함

□ 의결안건 제257호 『(주)000000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류하고 다음 회의시 상정할 것을 제안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미상정)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8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1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9시45분 폐회)